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7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 박상혁 • 박희승 • 김병기

노종면 • 정진욱 • 김현정

조승래 • 민병덕 • 이연희

박홍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, 불공정 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·의결기구인 증권선물 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 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사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~3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, 제재의 적시성이 낮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불법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음.

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, 상장법인 임 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 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(안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8조의4(지급정지)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, 제178조 또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 명의의 계좌 전부에 대하여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(이하이 조 및 제178조의7에서 "금융회사"라 한다)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계좌 명의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지급정지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, 절차,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8조의5(임원선임 제한)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

거쳐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, 제178조 또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를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자(이하 "선임제한대상자"라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장법인의 임원(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될 수 없다.
- ③ 상장법인의 임원이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.
- ⑥ 제4항에 따른 통지 절차 및 방법, 제5항에 따른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8조의6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) ①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5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대상자"라 한다)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- ② 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원 선임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.
- 제178조의7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) ① 제178조의4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78조의5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(이하이 조에서 "조치"라 한다)에 불복하는 자(이하이 조에서 "당사자"라 한다)는 제178조의4제3항 또는 제178조의5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 에 따라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 -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당사자(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회사와

상장법인을 포함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신 설> 제178조의4(지급정지) ① 금융위 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173조의2제2항, 제17 4조, 제176조, 제178조 또는 제 178조의2를 위반한 자 명의의 계좌 전부에 대하여 「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(이하이 이 조 및 제178조의7에서 "금융회사"라 한다)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
조시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계좌 명의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지급정지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

<신 설>

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, 절차,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8조의5(임원선임 제한) ① 금 용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, 제178조 또 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를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자(이하 "선임제한대상자"라 한다)로 지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 자로 지정된 자는 10년의 범위 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장법인의 임원(사 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)이 될 수 없다.

③ 상장법인의 임원이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<신 설>

-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-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.
- ⑥ 제4항에 따른 통지 절차 및방법, 제5항에 따른 공표 절차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8조의6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) ①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5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그 대상이 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대상자"라 한다)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<신 설>

<u>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의</u> <u>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</u> 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 거나 임원 선임제한 기간을 감 경할 수 있다.

제178조의7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) ① 제178 조의4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78조의5에 따른 선임제한대 상자 지정(이하 이 조에서 "조치"라 한다)에 불복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당사자"라 한다)는 제178조의4제3항 또는 제17 8조의5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있다.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 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

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당사 자(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해제 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관 런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을 포 함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5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